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익



여수시 조례 제2295호

붙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기타,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금”을 “융자계정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u>각목의 1</u> 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 ----- <u>각 목의 어느 하나</u>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6.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유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유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유자계정-----
--
3. (현행과 같음)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용도에 음자계정 기
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융자계정-----

② 음자계정 기금-----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

③ (생략)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2. (생략)

<신설>

3.·4. (생략)

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
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운용
에 필요한 경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

-----.

1.·2. (현행과 같음)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